

1. 개정이유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(“22.9.)에 따라,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(안 제18조)

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, 교육훈련, 경력관리·지원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, 교육훈련, 경력관리·지원 업무의 경우에만,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제4호까지의”를 “제3호까지의”로, “정보,”를 “정보(법 제31조 제6항제1호에 한정한다)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) 국토교통부장관(전문 기관을 포함한다)은 법 제31조 제6항제1호부터 <u>제4호까지의</u>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<u>정보</u> 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.	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<u>제3호까지의</u> -- ----- ----- ----- <u>정보(법</u> <u>제31조제6항제1호에 한정한다),</u> ----- ----- -----.